#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5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신영대·박희승·김정호

민형배 • 한병도 • 민병덕

임오경 • 한민수 • 전재수

윤준병 • 서삼석 • 정청래

홍기원 · 문금주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 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대부분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켜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분위기이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제기됨.

이에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 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을 "제3항, 제4항 또는 제7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⑦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대통령 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대통령 이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은 제외한다)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 인건비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하는 대체인력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⑦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u>"대체인력"이라 한다)을 2025년</u>
	<u>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에</u>
	는 대체인력 인원에 1,3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을 곱한 금액(「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지급된 고용안
	정장려금은 제외한다)을 고용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
	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
	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
	<u> 니한다.</u>
⑦ 제1항, <u>제3항 또는 제4항을</u>	⑧ <u>제3항, 제4항 또는</u>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u>제7항을</u>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u>제4항까지의</u> 규	⑨ <u>제7항까지의</u>
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	
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